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2. 5 선고 2024가단127432 판결 [구상금(임차보증금)청구]

##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피고B

변론 종결 2024. 11. 7.

판결 선고 2024. 12. 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77,470원과 그중 46,196,410원에 대하여 2024. 11. 2.부터 2024. 11. 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갑 제1호증부터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부터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저소득층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인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등과 관련하여 2021. 8. 13. 피고와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8. 31.부터 2023. 8.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보험가입금액 7,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24. 4. 25.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험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24. 8. 30. 540만 원, 2024. 9. 2. 500만 원, 2024. 9. 23. 900만 원, 2024. 10. 19. 500만 원 등 합계 2,440만 원을 변제하였다.

○ 2024. 11. 1.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금액은 47,877,470원(= 원금 46,196,410원 + 지연손해금 1,681,060원)이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7,877,470원과 그중 46,196,410원에 대하여 2024. 11. 2.부터 피고가 2024. 11. 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4. 11.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장수영**